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55
----------	-------

발의연월일 : 2018. 5. 4.

발의자 : 박경미 · 김관영 · 신창현

금태섭 · 김성수 · 이수혁

박주민 · 홍영표 · 김민기

노웅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것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문화시설의 현황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을 발간하여 문화시설 일부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통계 작성의 범위 설정 및 통계 자료의 수집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문화시설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시설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신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문화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 설치·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문화시설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4조(문화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 설치·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u></p> <p><u>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문화시설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u></p> <p><u>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p> <p><u>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u></p>

<p><u>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u></p>
